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7.10. 1	규정	제595호
전면개정	2010. 7.30	규정	제660호
	2011. 4. 1	규정	제672호
	2011. 7. 1	규정	제677호
	2016.12.16	규정	제842호
	2017. 4.26	규정	제866호
	2019. 1. 1	규정	제949호
	2019. 7. 1	규정	제979호
	2021. 4. 1	규정	제1028호
	2023. 6.15	규정	제10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및 감사,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 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본항신설 2011.4.1]

(8)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안각서 등을 정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7.1]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개정 2011.4.1)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및공고 <개정 2011.4.1>) ① 임원후보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서울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 및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 인재추천, 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9조의2(공고내용) 위원회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9조의3(재공고및변경공고) ①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

제9조의4(자격요건) ① 임원후보자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자격요건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를 보유한 자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의 경우 공단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1.4.1.>

[본조신설 2011.4.1](개정 2016.12.16.)

[전문개정 2019.1.1.]

제9조의5(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

제10조(응시원서접수 <개정 2011.4.1>) ①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②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공단 간사로 하여금 실무지원 처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1.4.1)
- ③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1.4.1)

제10조의1(전문가 유치노력) 이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 ③ 노동이사의 심사기준은 자격, 전체 노동자의 투표결과 등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6.12.16) <개정 2019.7.1., 2021.4.1.>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임원인사규정 제5조 제5항에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1.4.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4.1)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12조의2(노동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노동이사 후보자 대상 전체 노동자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개정 2019.7.1., 2021.4.1.>

1. 선관위원장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호선

2. 선관위원 : 노사대표 각 3명

② 선관위는 공단에서 정한 노동이사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노동이사 후보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 2021.4.1.>

③ 선관위는 제2항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체 노동자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19.7.1., 2021.4.1.>

④ 최종 노동이사 후보자는 투표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수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7.1., 2021.4.1.>

⑤ 제3항의 구체적인 투표절차와 방법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16]

[제목개정 2019.7.1., 2021.4.1.]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 후보의 경우 노동자투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천 한다. (단서신설 2016.12.16.)<개정 2019.7.1., 2021.4.1.>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3의 후보자 추천서 및 별표4의 선발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시장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4.1)(개정 2016.12.16, 2019.7.1., 2021.4.1.)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과정의공개<개정 2011.4.1>)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1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0.7.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정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2조의2 제명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항 및 제5항 중 “근로자 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투표”를 각각 “노동자투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1. 4. 1.)(정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2조의2 제명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1항 및 제5항 중 “노동자이사”를 각각 “노동이사”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3.6.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1조 관련) (신설 2011.4.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임원으로서의 리더십, 책임감 및 도덕성 등 보유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공기업 등 경영관련 전문적 지식과 마인드	·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마인드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별표 2> (제12조 관련) (신설 2011.4.1)

심 사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점수				
전문성 (20)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20	18	16	14	12
	2.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3.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4. 환경변화 예측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리더쉽 (20)	1.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20	18	16	14	12
	2.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경영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20	18	16	14	12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3.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 능력					
	4.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20	18	16	14	12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3. 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					
	4.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윤리관 (10)	1.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략사업의 인식	10	9	8	7	6
	2. 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성실성 (10)	1.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10	9	8	7	6
	2.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실껏 임하는 자세					
합 계		/100				

<별표 3> (제13조 관련) (신설 2011.4.1)

임원후보자 추천서

서울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별표 4> (제13조 관련) (신설 2011.4.1)

선발결과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간	인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월) 0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 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 ○.○),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 ○.○),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
-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비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형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고
자치단체장 추천				학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